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3. 10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-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“754”를 “796”으로 함.
- 총계란 “770”을 “812”로 함.
- ※ 이천시의 표준정원 812명(일반직 35명, 기능직 7명)증원 가능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'04년도 본예산 반영요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

- 표준정원제 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증개정규칙시행지침(자제 12200-247, '03.5.9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754”를 “796”으로 하고, “770”을 “81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최 흥 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사담당 신 성 현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고 광 윤 (644-2107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집행기관의 정원 : <u>754명</u></p> <p>2.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총 계 : <u>770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집행기관의 정원 : <u>796명</u></p> <p>2.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총 계 : <u>812명</u></p>